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손 술 · 임미애
김재원 · 김성희 · 조계원
권향엽 · 김주영 · 신장식
김 윤 · 박지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,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,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,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.

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 ① · ② (생 략)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 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	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</u> <u>육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